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

■ 최보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267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선 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보윤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4. 30.
3. 회 부 일 : 2025. 5.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기본법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호 제100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서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6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⑤ (생략) ⑥ 국무총리는 제3항 각 호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u>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2. ~ 4. (생략) ⑦ (생략)	제2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u>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2. ~ 4.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함)¹⁾ 위원 해촉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포함되어 있음²⁾.

- 이는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직위에 새로운 사람을 위촉하여 정책위원회가 공백 없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그러나 위원의 해촉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

1) 정책위원회는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위원회로,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임. 【참고자료 1】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요

2) 「소비자기본법」

제23조(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소비자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이하 “등록소비자단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제단체에서 추천하는 소비자대표 및 경제계대표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장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된다.

⑥ 국무총리는 제3항 각 호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그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해촉 사유의 ‘심신장애’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대체하여 ‘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위원 구성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 방향으로 보임.

- 참고로, ‘심신장애’라는 표현 대신 ‘심신쇠약’ 또는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입법례가 다수 있음.

법률명	유사 입법례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제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제62조)
감사원법	(감사위원) 장기(長期)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제8조)
국세기본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제67조)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 위원)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제13조)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소속 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66조의8)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소속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제74조의13)

법률명	유사 입법례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국무총리 소속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제8조)
통일교육 지원법	(통일교육위원)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제10조의2)
특별감찰관법	(특별감찰관)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4조)

□ 다만, 개정안은 사고 또는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은 본인 외 제3자가 확인하기 어려워³⁾, 해촉 대상자가 진단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함에도 해당 직위에서 배제할 수 없게 되므로,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 측면을 고려해,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 요건을 삭제하는 안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음.

□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국제협력개발기

3)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②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 5. (생략)

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이하 생략)

본법」 등 유사 입법례,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⁴⁾, UN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⁵⁾등을 고려하여 수용 의견임.

□ 참고로,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부 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 2210035호)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266호)」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⁶⁾.

문 의 처
02)6788-5115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발효일 2008. 5. 3] [다자조약, 제1928호, 2009. 1. 9]

제29조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치적 권리와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가. (생략)

나.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적 활동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다음을 포함한 장애인의 공적 활동에의 참여를 장려할 것

1) 국가의 공적·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비정부기구 및 비정부단체와 정당 활동 및 운영에의 참여

2) 국제적, 국내적, 지역적 및 지방적 차원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 단체의 결성과 가입

6) 【참고자료 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부위원회 소관 개정 대상 법률의 내용

【참고자료 1】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요

- (목적)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소비자기본법 제23조)

* 소비자보호위원회('82년)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86년) → 소비자정책위원회('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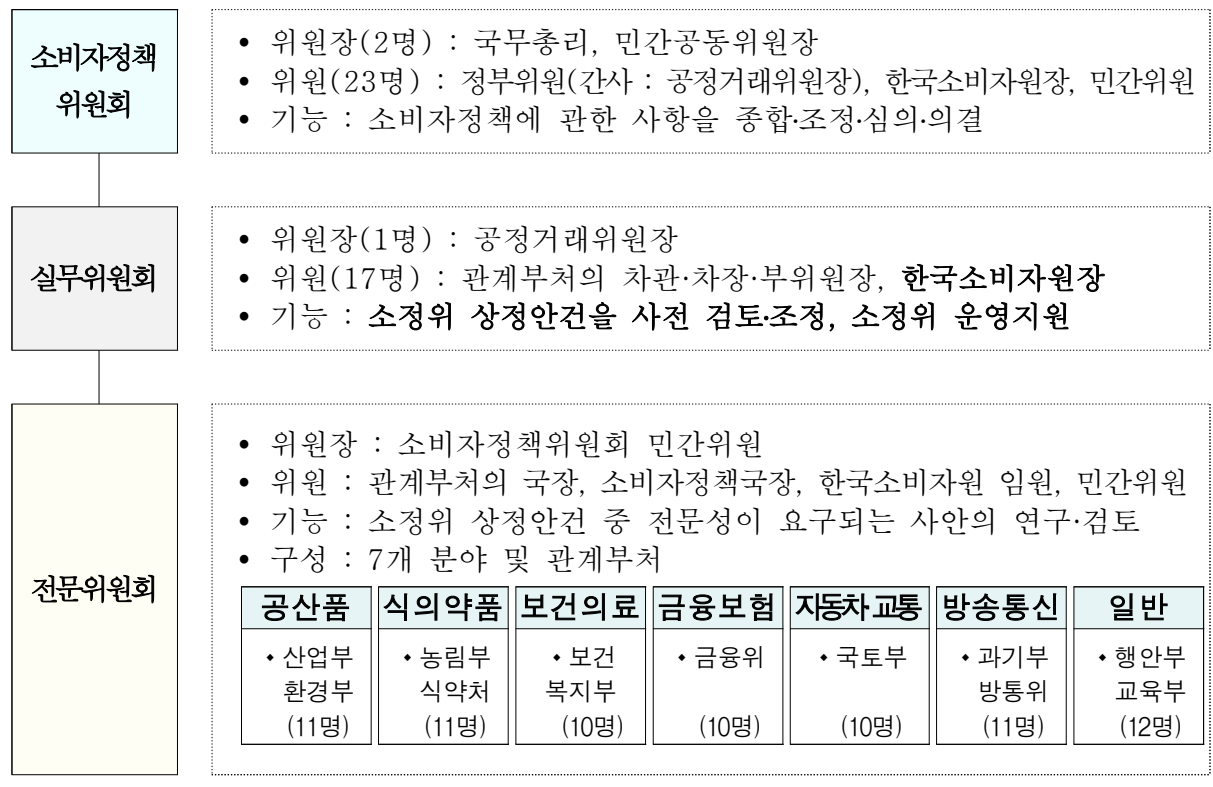
- (기능) 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법 제25조①),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고시 등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법 제25조②)

- 기본계획(3년 단위) 및 정책종합시행계획(매년)의 수립·평가와 그 결과공표
-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소비자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 (구성) 위원장 2인(국무총리, 민간위원장) 포함, 총 25인 이내

- (당연직)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소비자원장 등
- (위촉직) 민간공동위원장, 소비자대표, 경제계대표 등

- (산하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7개)



**【참고자료 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개정
대상 법률의 내용**

현행법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 위원)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위원)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의안번호 제2210035호)
금융소비자 보호법	(금융분쟁조정위 위원)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금융 위원회법	(금융위 위원)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원장 및 감사)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서민금융법	(서민금융진흥원 임원, 휴면예금관리위·신용회복위 위원)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	
신용보증 기금법	(신용보증기금 임원)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예금자 보호법	(예금보험공사 임원, 예금보험위 위원) 심신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한국산업 은행법	(산업은행 임원)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한국자산관리 공사법	(자산관리공사 임원)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한국주택 금융공사법	(주택금융공사 임원)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 경우	
화재보험법	(화재보험협회 임원)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의안번호 제2210266호) (의안번호 제2210267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소비자 기본법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